



등기번호	640537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보통주식 400,000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208,000 주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 97,674 주	금 70,567,400 원	2019.11.06 등기

목 적
1. AI시스템 개발 및 공급업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임원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백준호(BAEK JOON HO) 1977년 10월 8일생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통로525번길 35, 102동 1804호(영덕동, 동부센트레빌)	2017년 04월 04일 취임 2017년 04월 04일 등기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백준호(BAEK JOON HO) 1977년 10월 8일생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38, 101동 1304호(하동)	2019년 02월 14일 주소변경 2020년 04월 07일 등기 2020년 04월 04일 중임 2020년 04월 07일 등기
사내이사 미합중국인 백준호(BAEK JOON HO) 1977년 10월 8일생	2017년 04월 04일 취임 2017년 04월 04일 등기 2020년 04월 04일 중임 2020년 04월 07일 등기
사내이사 구형일 771027-*****	2017년 04월 04일 취임 2017년 04월 04일 등기 2020년 04월 04일 중임 2020년 04월 07일 등기
사내이사 김한준 830227-*****	2017년 04월 04일 취임 2017년 04월 04일 등기 2020년 04월 04일 중임 2020년 04월 07일 등기
감사 박종흠 771219-*****	2017년 04월 04일 취임 2017년 04월 04일 등기 2020년 03월 27일 중임 2020년 04월 07일 등기
사외이사 김태수 850316-*****	2020년 07월 10일 취임 2020년 07월 15일 등기

종류주식의 내용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내용 1. 상환전환우선주는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보통주에 대해 우선권이 있는 주식(이하 “우선주”)이고,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자 상환주식이며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다. 2. 우선주의 존속기간(이하 “존속기간”)은 발행일부터 10년(2027년 6월 21일)까지로 정하며, 존속기간이 경과하면 우선주는 보통주로 자동 전환된다. 다만, 정관 제8조5에 의해 투자자로부터 상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우선주로서 존속된다. 미지급배당금이 있거나 존속기간 만료시에 배당가능이익이 정관 제8조5의 제1항 제다.호에서 정한 상환가

등기번호	640537
------	--------

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지급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또는 배당가능이익이 상환가액을 초과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이 확정된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우선주로 존속한다.

3. 기타 우선주의 내용에 관하여는 정관 제8조1부터 제8조6까지에서 정한다.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배당에 관한 사항

우선주의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적 권리의 내용은 다음 각항과 같다.

1. 투자기업이 배당을 실시할 경우 본건 우선주의 우선배당률: 발행가액의 1%
2.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배당참가여부: 참가함
3. 실제 배당이 우선배당율에 미달할 경우 후년도의 누적여부: 후년도의 이익배당에 대하여 누적적으로 배당받음
4. 우선주에 대한 초년도 배당기산일: 투자기업 설립 시 주주가 된 것으로 보고 배당금 계산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1. 투자자는 투자기업이 청산되거나 제3자에게 합병, 주식교환,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등 여하의 방식으로 인수되는 경우, 잔여재산분배 또는 인수대가의 분배에 있어서 우선주의 발행가액에 연복리 8.0%를 가산한 금액(이하 “잔여재산분배액”이라 하며, 기 지급된 배당금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분배액에서 해당 배당금을 차감한다)의 한도에서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 또는 인수대가를 분배받을 권리를 갖는다. 단, 잔여재산 또는 인수대가가 잔여재산분배액에 미치지 않은 경우 투자자는 각 지분비율에 따라 해당 잔여재산 또는 인수대가에 관하여 분배받을 권리를 갖는다.

2. 우선주에 대한 우선 분배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투자자는 잔여재산에 대해 다른 주주들과 함께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배받을 권리를 갖는다.

3. 제1항에 있어 투자기업의 계획사업 영위를 위한 중요 유/무형자산이나 영업권 등이 대부분 처분되거나 소멸한 경우 사실상의 청산 또는 피인수로 간주되며,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기업의 해산&#61598;청산 및 제1항에 따른 잔여재산 또는 인수대가의 분배를 투자기업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제1항의 잔여재산 또는 인수대가의 가액은 공인된 감정인, 공인회계사 또는 그에 준하여 투자자가 인정하는 평가인에 의한다.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전환에 관한 사항

1. 투자자는 존속기간 내에 언제든지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 및 정관 제8조 1의 제2항에 의한 전환의 경우에 적용되는 전환가액 및 전환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하고, 최초의 전환가액은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본 계약에 따라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는 해당 조건에 의거 전환가액이 조정되고 그에 따라 전환비율도 조정된다.

나. 투자자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투자기업이 투자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내용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연계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이익참가부사채 등)를 발행(사후적으로 전환가액이 투자자의 전환가액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할 경우에는 투자자가 인수한 우선주의 전환가액도 같은 금액으로 하향 조정되며, 수차에 걸쳐 이와 같은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나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우선주의 전환가액은 그 중 가장 낮은 발행가액으로 하향 조정된다. 단,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은 주식매

등기번호	640537
------	--------

수선택권의 부여 및 우리사주조합 배정 유상증자는 본 항의 전환가액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조정전 전환가액) /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 주식수)

라. 주식분할, 주식병합의 경우 전환가액은 분할비율, 병합비율에 따라 조정되고 이에 상응하게 전환비율도 조정된다.

마. 제 나.호에도 불구하고, 상장된 투자기업이 투자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 시가를 하회하는 내용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며, 이에 따라 전환비율도 조정된다.

조정 후 시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 주식수) }

위 산식에서 기발행 주식수 산정시 전환우선주, 주식연계사채는 조정 후 전환가액 산정 당시의 당해 전환가액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보통주식수를 적용하고, 신발행 주식수 산정에는 신발행되는 우선주, 특수사채의 전환가액 및 하향조정된 전환가액(사후적으로 전환가액이 투자자의 전환가액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를 적용하여 산출된 보통주식수를 적용한다. 아울러 위 산식에서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식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바. 투자기업이 IPO 공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제3자와 인수합병(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통한 기업결합을 포함함), 영업양도, M&A(제3자의 지분 취득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경영권 변경 포함)시 해당 거래가액의 산정을 위한 투자기업 주식의 평가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가액을 해당 공모가의 70% 또는 평가가액의 70%의 금액으로 조정하고 전환비율도 이에 따라 조정한다.

사. 우선주의 전환청구 전에 제나.호부터 제바.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각 조정 전 전환가격은 직전회차 조정 후 전환가격으로 하며, 제나.호와 제다.호를 적용함에 있어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주는 전환가액조정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반영한다.

아. 이 계약에 의해 산정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3. 투자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유·무상증자 등을 실시함으로써 제2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이 액면 가액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투자기업은 유·무상증자 등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4. 투자기업은 제1항에 의한 전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까지 투자기업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본 계약에 의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보유하여야 한다.

5.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및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상환에 관한 사항

1. 투자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기업에 대하여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상환청구기간: 투자자는 2020년 6월 22일부터 2027년 6월 21일까지 상환 청구할 수 있는

등기번호	640537
------	--------

권리를 갖는다. 이때, 가능이익이 투자자의 상환가액에 미달할 경우 투자자는 각 지분비율에 따라 가능이익에 관하여 분배받을 권리를 갖는다.

나. 상환방법: 투자자는 투자기업에 서면으로 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투자기업은 상환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상환가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시의 배당가능이익이 제다.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미달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후 각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승인을 통해 배당가능이익이 확정되는 날의 다음날에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 상환가액: 상환을 청구한 우선주의 발행가액(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이 있더라도 그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이 계약에 의거 투자기업에 납입한 주금납입총액을 기준으로 함)과 이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제나.호에서 정한 상환하여야 할 날(상환하여야 할 날 이전에 상환할 경우에는 실제 상환일)까지 연복리 8%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기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자금액을 한도로 상환가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라. 투자기업이 제나.호에서 정한 상환하여야 할 날에 상환하지 못하여 연체가 발생할 경우 투자기업은 상환가액에 대하여 이 계약체결일의 투자자의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복리 15%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마.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은 우선주의 상환청구에 응할 수 있도록 매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내에서 상환주식에 대한 상환준비금을 최대한 최우선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배당가능이익(배당가능이익으로 환원 가능한 법정준비금 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우선주의 상환청구에 일부 금액이라도 응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이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투자자가 판단하기에 최대한 최우선적으로 상환준비금을 적립했다면 상환에 추가적으로 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산출되는 금액(최대한 최우선적으로 적립가능했던 상환준비금과 실제 상환에 응하였던 금액의 차액으로서, 상환청구에 응하지 못한 금액을 상한으로 함)으로 정하며,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은 배상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투자자가 달리 지정하는 기일 내(이하 통칭하여 "배상기일")에 배상을 완료하여야 한다.

바.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우선주의 상환청구에 응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으로 환원이 가능한 법정준비금에 대하여는 법률상 가능한 최대한을 배당가능이익으로 환원하여 상환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사.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가 상환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상법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이 때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2. 투자기업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전항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해관계인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전항의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단, 전항에서 정하거나 투자자가 별도로 요청한 조치를 포함하여 상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투자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등에서 정한 상환요건의 충족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계약서상 제33조 제1항 각 호의 경우 투자자는 투자기업에 대해 우선주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본 계약에 의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상환전환우선주(단, 우선권을 행사한 이후의 무상증자의 경우는 우선권 행사 후 보유 주식을 의미함)로, 유상증자 및

등기번호	640537
------	--------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투자기업이 발행기로 한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2017년 06월 23일 설정      2017년 06월 30일 등기

상환전환우선주식

(2017. 7. 22. 발행 상환전환우선주식 내용)

- 주식 내용 개요

1. 본 발행되는 신주는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보통주에 대해 우선권이 있는 주식(이하 “우선주”)이고,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자 상환주식이며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다.
2. 우선주의 존속기간(이하 “존속기간”)은 발행일부터 10년까지로 정하며, 존속기간이 경과하면 우선주는 보통주로 자동 전환된다. 다만, 투자자로부터 상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우선주로서 존속된다.

- 배당에 관한 사항

우선주의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적 권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투자기업이 배당을 실시할 경우 본건 우선주의 우선배당률: 발행가액의 1%
2.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배당참가여부: 참가함
3. 실제 배당이 우선배당율에 미달할 경우 후년도의 누적여부: 후년도의 이익배당에 대하여 누적적으로 배당받음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1. 투자자는 투자기업이 청산되거나 제3자에게 합병, 주식교환, 주식양수도, 영업양수도 등 여하의 방식으로 인수되는 경우, 잔여재산분배 또는 인수대가의 분배에 있어서 우선주의 발행가액에 연복리8%를 가산한 금액(이하 “잔여재산분배액”이라 하며, 기 지급된 배당금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분배액에서 해당 배당금을 차감한다)의 한도에서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 또는 인수대가를 분배받을 권리를 갖는다.
2. 우선주에 대한 우선 분배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투자자는 잔여재산에 대해 다른 주주들과 함께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배받을 권리를 갖는다.

- 전환에 관한 사항

1. 투자자는 존속기간 내에 언제든지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전환의 경우에 적용되는 전환가액 및 전환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하고, 최초의 전환가액은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투자자와의 계약에 따라 전환가액의 조정과 관련한 조건이 있는 경우는 해당 조건에 의거 전환가액이 조정되고 그에 따라 전환비율도 조정된다.
  - 2) 투자자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투자기업이 투자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내용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연계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이익참가부사채 등)를 발행(사후적으로 전환가액이 투자자의 전환가액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할 경우에는 투자자가 인수한 우선주의 전환가액도 같은 금액으로 하향 조정되며, 수차에 걸쳐 이와 같은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나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우선주의 전환가액은 그 중 가장 낮은 발행가액으로 하향 조정된다.
  - 3)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text{조정후전환가액} = (\text{기발행주식수} \times \text{조정전전환가액}) / (\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등기번호	640537
------	--------

<p>4)주식분할, 주식병합의 경우 전환가액은 분할비율, 병합비율에 따라 조정되고 이에 상응하게 전환비율도 조정된다.</p> <p>5)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장된 투자기업이 투자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 시가를 하회하는 내용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며, 이에 따라 전환비율도 조정된다.</p> <p>조정후행사가액 = 조정전행사가액X((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X(1주당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p> <p>위 산식에서 기발행 주식수 산정시 전환우선주, 주식연계사채는 조정 후 전환가액 산정 당시의 당해 전환가액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보통주식수를 적용하고, 신발행 주식수 산정에는 신발행되는 우선주, 특수사채의 전환가액 및 하향조정된 전환가액(사후적으로 전환가액이 투자자의 전환가액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를 적용하여 산출된 보통주식수를 적용한다. 아울러 위 산식에서 시가는 증권발행 및 공식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p> <p>6)투자기업이 IPO 공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제3자와 인수합병(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통한 기업결합을 포함함), 영업양도, M&amp;A(제3자의 지분 취득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경영권 변경 포함)시 해당 거래가액의 산정을 위한 투자기업 주식의 평가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가액을 해당 공모가의 70% 또는 평가가액의 70%의 금액으로 조정하고 전환비율도 이에 따라 조정한다.</p> <p>7)우선주의 전환청구 전에 제2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각 조정 전 전환가격은 직전회차 조정 후 전환가격으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주는 전환가액조정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반영한다.</p> <p>8)산정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p> <p>- 상환에 관한 사항</p> <p>투자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기업에 대하여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p> <p>1.상환청구기간: 투자자는 주금납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날부터 우선주 존속기한 만료일까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p> <p>2.상환가액: 상환을 청구한 우선주의 발행가액(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이 있더라도 그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투자기업에 납입한 주금납입총액을 기준으로 함)과 이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하여야 할 날(상환하여야 할 날 이전에 상환할 경우에는 실제 상환일)까지 연복리 8%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기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자금액을 한도로 상환가액에서 이를 차감한다.</p> <p>- 신주인수권</p> <p>투자자는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본 동일한 내용의 상환전환우선주(단, 우선권을 행사한 이후의 무상증자의 경우는 우선권 행사 후 보유 주식을 의미함)로,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투자기업이 발행키로 한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p> <p>2017년 07월 22일 설정      2017년 07월 25일 등기</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p> <p>상환전환우선주의 조건</p>
--

등기번호	640537
------	--------

제1조 (주식 내용 개요)

- ① 본건 우선주는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보통주에 대해 우선권이 있는 주식이고,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자 상환주식이며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다.
- ② 본건 우선주의 존속기간(이하 “존속기간”)은 발행일부터 10년(2029년 8월 9일)까지로 정하며, 존속기간이 경과하면 본건 우선주는 보통주로 자동 전환된다. 다만, 본건 우선주 주주로부터 상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우선주로서 존속된다. 미지급배당금이 있거나 존속기간 만료시에 배당가능이익이 상환가액(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의한 상환가액에 따름, 이하 동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지급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또는 배당가능이익이 상환가액을 초과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이 확정된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우선주로 존속한다.

제2조 (배당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의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적 권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회사가 배당을 실시할 경우 본건 우선주의 우선배당률: 발행가액의 1%
- 2. 보통주의 배당률이 본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배당참가여부: 참가함
- 3. 실제 배당이 우선배당율에 미달할 경우 후년도의 누적여부: 후년도의 이익배당에 대하여 누적적으로 배당받음

제3조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① 회사가 청산할 경우, 본건 우선주는 그 발행가액 및 연복리 8%로 가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 및 기존 우선주(KT-DSC창조경제청년창업투자조합, DSC Follow-on 성장사다리펀드, 네이버 주식회사가 2017. 6. 16자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에 따라 발행한 우선주 및 산은캐피탈(주)이 2017. 7. 14자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에 따라 발행한 우선주, 이하 본조에서 동일함)에 우선하여 잔여재산 분배 또는 인수대가의 분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된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이와 같이 본건 우선주에 대한 분배 후 남은 재산에 대하여는 기존 우선주가 그 발행가액 및 연복리 8%로 가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 분배를 받으며,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된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보통주는 모든 우선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 후 남은 잔여재산을 보통주의 발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배분 받는다. 그 후에도 잔여재산이 남는 경우, 모든 우선주 및 보통주는 지분비율(모든 우선주는 잔여재산 배분 시점의 각 우선주의 전환단가로 보통주 전환된 것으로 간주)에 따라서 잔여재산을 배분 받는다.
- ② 회사가 청산을 위하여 회사의 중요한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 주주는 회사가 매각하고자 하는 중요한 재산을 제3자에 우선하여 매수할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하여 회사는 본건 우선주 주주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의 내역 및 양도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를 하여야 하며, 본건 우선주 주주가 위 서면통지에 대하여 매수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위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매수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매각대상 재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본건 우선주 주주에 대한 위 서면통지에 기재된 조건보다 제3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청산으로 간주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등기번호	640537
------	--------

1. 회사에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회사 존속에 기초가 되는 자산으로서 그 처분이 회사의 영업양도나 폐지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자산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전부를 매각, 임대, 양도, 기타 방법에 의해 처분한 경우, 해당 자산에 관한 지식재산권이 제3자에게 독점적으로 허여되는 경우  
3. 회사가 신설합병 또는 흡수합병 되거나 단일 또는 일련의 거래에 의해 다른 회사에 의하여 인수 또는 매각되고 위 합병 또는 인수 후 회사의 주주가 존속회사(존속회사가 완전 자회사인 경우 존속 회사의 모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50% 미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④ 제1항의 잔여재산 또는 인수대가의 가액은 공인된 감정인, 공인회계사 또는 그에 준하여 본건 우선주 주주가 인정하는 평가인에 의한다.

제4조 (전환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우선주 주주는 존속기간 내에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 및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전환의 경우에 적용되는 전환가액 및 전환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하고, 최초의 전환가액은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본 계약에 따라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는 해당 조건에 의거 전환가액이 조정되고 그에 따라 전환비율도 조정된다.  
2. 본건 우선주 주주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회사가 본건 우선주 주주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내용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연계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이익참가부사채 등)를 발행(사후적으로 전환가액이 본건 우선주 주주의 전환가액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할 경우에는 본건 우선주 주주가 인수한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도 같은 금액으로 하향 조정되며, 수차에 걸쳐 이와 같은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나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은 그 중 가장 낮은 발행가액으로 하향 조정된다. 단, 본건 우선주 주주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우리사주조합 배정 유상증자는 본 항의 전환가액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3.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조정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 주식수)  
4. 주식분할, 주식병합의 경우 전환가액은 분할비율, 병합비율에 따라 조정되고 이에 상응하게 전환비율도 조정된다.  
5. 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장된 회사가 본건 우선주 주주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 시가를 하회하는 내용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며, 이에 따라 전환비율도 조정된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 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 주식수)  
위 산식에서 기발행 주식수 산정시 전환우선주, 주식연계사채는 조정 후 전환가액 산정 당시의 당해 전환가액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보통주식수를 적용하고, 신발행 주식수 산정에는 신발행되는 우선주, 특수사채의 전환가액 및 하향조정된 전환가액(사후적으로 전환가액이 본건 우선주 주주의 전환가액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를 적용하여 산출된 보통주식수를 적용한다.  
아울러 위 산식에서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식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 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등기번호	640537
------	--------

6. 회사가 IPO 공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제3자와 인수합병(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통한 기업결합을 포함함), M&A(제3자의 지분 취득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경영권 변경 포함)시 해당 거래가액의 산정을 위한 회사 주식의 평가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가액을 해당 공모가의 70% 또는 평가가액의 70%의 금액으로 조정하고 전환비율도 이에 따라 조정한다.

7. (i)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회사가 주당 발행단가를 육만이백이십칠원(금60,227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본조 제2항 제3호를 준용하여 조정된 가격) 이상으로 하여 백억원(금10,000,000,000원) 이상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이하 “Qualified Financing”), 최초 1회에 한하여 조정 후 전환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 전환비율도 이에 따라 전환한다. 단, 조정 후 전환 가격은 본건 우선주 발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i) {Qualified Financing 발생 당시 투자 전 전체 지분가치×(100-할인율)÷100} 또는 육백억원(금60,000,000,000원) 중 작은 값에 0.85를 곱한 후 (ii) 본건 우선주와 같은 발행가액으로 발행한 주식의 전체 납입금액에 0.15를 곱한 값을 차감하고 이를 2019.7.26 기준 기발행주식의 총수 608,000주(보통주 400,000주, 우선주 208,000주, 단, 이 계약 체결 후 해당 주식의 총수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반영한 것을 의미)로 나눈 값

단. 이때 할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i. Qualified Financing이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경우: 20  
 ii. Qualified Financing이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9개월을 초과하여 18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경우: 30  
 iii. Qualified Financing이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을 초과하여 24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경우: 40

(ii)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Qualified Financing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금39,967원(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본조 제2항 제3호를 준용하여 조정된 가격)으로 조정하고 전환비율도 이에 따라 전환한다.

8. 본건 우선주의 전환청구 전에 제2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각 조정 전 전환가격은 직전회차 조정 후 전환가격으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주는 전환가액조정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반영한다.

9. 이 계약에 의해 산정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③ 본건 우선주 주주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유·무상증자 등을 실시함으로써 제2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이 액면 가액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회사는 유·무상증자 등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전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본 계약에 의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보유하여야 한다.

⑤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및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상환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우선주 주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환청구기간: 본건 우선주 주주는 2022년 8월 9일부터 2029년 8월 9일까지 상환 청구할

등기번호	640537
------	--------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때, 배당가능이익이 본건 우선주 주주의 상환가액에 미달할 경우 본건 우선주 주주는 각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에 관하여 분배받을 권리를 갖는다.

2. 상환방법: 본건 우선주 주주는 회사에 서면으로 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상환청구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상환가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시의 배당가능이익이 제3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미달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후 각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승인을 통해 배당가능이익이 확정되는 날의 다음날에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3. 상환가액: 상환을 청구한 본건 우선주의 발행가액(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이 있더라도 그에 불구하고 본건 우선주 주주가 이 계약에 의거 회사에 납입한 주금납입총액을 기준으로 함)과 이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제2호에서 정한 상환하여야 할 날(상환하여야 할 날 이전에 상환할 경우에는 실제 상환일)까지 연복리 8%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기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자금액을 한도로 상환가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4. 회사가 제2호에서 정한 상환하여야 할 날에 상환하지 못하여 연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상환가액에 대하여 이 계약체결일의 본건 우선주 주주의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복리 15%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5.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본건 우선주의 상환청구에 응할 수 있도록 매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내에서 상환주식에 대한 상환준비금을 최대한 최우선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배당가능이익(배당가능이익으로 환원 가능한 법정준비금 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본건 우선주의 상환청구에 일부 금액이라도 응하지 못할 경우 본건 우선주 주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본건 우선주 주주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본건 우선주 주주가 판단하기에 최대한 최우선적으로 상환준비금을 적립했다면 상환에 추가적으로 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산출되는 금액(최대한 최우선적으로 적립가능했던 상환준비금과 실제 상환에 응하였던 금액의 차액으로서, 상환청구에 응하지 못한 금액을 상한으로 함)으로 정하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배상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본건 우선주 주주가 달리 지정하는 기일 내(이하 통칭하여 "배상기일")에 배상을 완료하여야 한다.

6.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본건 우선주 주주가 요청할 경우, 본건 우선주의 상환청구에 응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으로 환원이 가능한 법정준비금에 대하여는 법률상 가능한 최대한을 배당가능이익으로 환원하여 상환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7.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본건 우선주 주주가 상환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상법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이 때 이해관계인은 본건 우선주 주주의 요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전항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해관계인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전항의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단, 전항에서 정하거나 본건 우선주 주주가 별도로 요청한 조치를 포함하여 상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등에서 정한 상환요건의 충족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 이해관계인 중 김한준(이하 "김한준")은 김한준 본인의 증대한 과실 또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 항에 따른 의무·책임을 부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불이행 등의 경우 본건 우선주 주주는 회사에 대해 본건 우선주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 (신주인수권)  
 본건 우선주 주주는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본 계약에 의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상환전환우선주

등기번호	640537
------	--------

(단, 우선권을 행사한 이후의 무상증자의 경우는 우선권 행사 후 보유 주식을 의미함)로,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2019년 08월 09일 설정      2019년 09월 16일 등기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

(2019.09.10. 발행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

상환전환우선주의 조건

제1조 (주식 내용 개요)

① 본건 우선주는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보통주에 대해 우선권이 있는 주식이고,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자 상환주식이며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다.

② 본건 우선주의 존속기간(이하 “존속기간”)은 발행일부터 10년(2029년 9월 9일)까지로 정하며, 존속기간이 경과하면 본건 우선주는 보통주로 자동 전환된다. 다만, 본건 우선주 주주로부터 상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우선주로서 존속된다. 미지급배당금이 있거나 존속기간 만료시에 배당가능이익이 상환가액(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의한 상환가액에 따름, 이하 동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지급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또는 배당가능이익이 상환가액을 초과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이 확정된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우선주로 존속한다.

제2조 (배당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의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적 권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사가 배당을 실시할 경우 본건 우선주의 우선배당률: 발행가액의 1%
2. 보통주의 배당률이 본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배당참가여부: 참가함
3. 실제 배당이 우선배당율에 미달할 경우 후년도의 누적여부: 후년도의 이익배당에 대하여 누적적으로 배당받음

제3조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① 회사가 청산할 경우, 본건 우선주 및 2019.7.26자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에 따라 (주)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에게 발행한 우선주는 그 발행가액 및 연복리 8%로 가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 및 기존 우선주 (KT-DSC창조경제청년창업투자조합, DSC Follow-on 성장사다리펀드, 네이버 주식회사와 2017. 6. 16자 체결한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에 따라 회사가 발행한 우선주 및 산은캐피탈(주)와 2017. 7. 14자 체결한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에 따라 회사가 발행한 우선주, 이하 본조에서 동일함)에 우선하여 잔여재산 분배 또는 인수대가의 분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된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이와 같이 본건 우선주 및 2019.7.26자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에 따라 (주)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에게 발행한 우선주에 대한 분배 후 남는 재산에 대하여는 기존 우선주가 그 발행가액 및 연복리 8%로 가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 분배를 받으며,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된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보통주는 모든 우선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 후 남는 잔여재산을 보통주의 발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배분 받는다. 그 후에도 잔여재산이 남는 경우, 모든 우선주 및 보통주는 지분비율(모든 우선주는 잔여재산 배분 시점의 각 우선주의 전환단가로 보통주 전환된 것으로 간주)에 따라서 잔여재산을 배분 받는다.

② 회사가 청산을 위하여 회사의 중요한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 주주는 회사가 매각하고자 하는 중요한 재산을 제3자에 우선하여 매수할

등기번호	640537
------	--------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하여 회사는 본건 우선주 주주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의 내역 및 양도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를 하여야 하며, 본건 우선주 주주가 위 서면통지에 대하여 매수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위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매수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매각대상 재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본건 우선주 주주에 대한 위 서면통지에 기재된 조건보다 제3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청산으로 간주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1. 회사에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회사 존속에 기초가 되는 자산으로서 그 처분이 회사의 영업양도나 폐지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자산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전부를 매각, 임대, 양도, 기타 방법에 의해 처분한 경우, 해당 자산에 관한 지식재산권이 제3자에게 독점적으로 허여되는 경우
  3. 회사가 신설합병 또는 흡수합병 되거나 단일 또는 일련의 거래에 의해 다른 회사에 의하여 인수 또는 매각되고 위 합병 또는 인수 후 회사의 주주가 존속회사(존속회사가 완전 자회사인 경우 존속 회사의 모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50% 미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 ④ 제1항의 잔여재산 또는 인수대가의 가액은 공인된 감정인, 공인회계사 또는 그에 준하여 본건 우선주 주주가 인정하는 평가인에 의한다.

제4조 (전환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우선주 주주는 존속기간 내에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 및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전환의 경우에 적용되는 전환가액 및 전환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하고, 최초의 전환가액은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본 계약에 따라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는 해당 조건에 의거 전환가액이 조정되고 그에 따라 전환비율도 조정된다.
2. 본건 우선주 주주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회사가 본건 우선주 주주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내용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연계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이익참가부사채 등)를 발행(사후적으로 전환가액이 본건 우선주 주주의 전환가액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할 경우에는 본건 우선주 주주가 인수한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도 같은 금액으로 하향 조정되며, 수차에 걸쳐 이와 같은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나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은 그 중 가장 낮은 발행가액으로 하향 조정된다. 단, 본건 우선주 주주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우리사주조합 배정 유상증자는 본 항의 전환가액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3.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text{조정후 전환가액} = (\text{기발행주식수} \times \text{조정전 전환가액}) \div (\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 주식수})$$

4. 주식분할, 주식병합의 경우 전환가액은 분할비율, 병합비율에 따라 조정되고 이에 상응하게 전환비율도 조정된다.

5. 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장된 회사가 본건 우선주 주주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 시가를 하회하는 내용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며, 이에 따라 전환비율도 조정된다.

$$\text{조정 후 행사가액} = (\text{조정 전 행사가액} \times \{\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 주식수} \times (\text{1주당 발행가}$$

등기번호	640537
------	--------

액 ÷ 시가)]] ÷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 주식수)  
위 산식에서 기발행 주식수 산정시 전환우선주, 주식연계사채는 조정 후 전환가액 산정 당시의 당해 전환가액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보통주식수를 적용하고, 신발행 주식수 산정에는 신발행되는 우선주, 특수사채의 전환가액 및 하향조정된 전환가액(사후적으로 전환가액이 본건 우선주 주주의 전환가액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를 적용하여 산출된 보통주식수를 적용한다. 아울러 위 산식에서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식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 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6. 회사가 IPO 공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제3자와 인수합병(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통한 기업결합을 포함함), M&A(제3자의 지분 취득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경영권 변경 포함)시 해당 거래가액의 산정을 위한 회사 주식의 평가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가액을 해당 공모가의 70% 또는 평가가액의 70%의 금액으로 조정하고 전환비율도 이에 따라 조정한다.

7. (a)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회사가 주당 발행단가를 육만이백이십칠원(금60,227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본조 제2항 제3호를 준용하여 조정된 가격) 이상으로 하여 백억원(금10,000,000,000원) 이상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이하 “Qualified Financing”), 최초 1회에 한하여 조정 후 전환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 전환비율도 이에 따라 전환한다. 단, 조정 후 전환 가격은 본건 우선주 발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i) {Qualified Financing 발생 당시 투자 전 전체 지분가치×(100-할인율)÷100} 또는 육백억원(금60,000,000,000원) 중 작은 값에 0.85를 곱한 후 (ii) 본건 우선주와 같은 발행가액으로 발행한 주식의 전체 납입금액에 0.15를 곱한 값을 차감하고 이를 2019.7.26 기준 기발행주식의 총수 608,000주(보통주 400,000주, 우선주 208,000주, 단, 이 계약 체결 후 해당 주식의 총수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반영한 것을 의미)로 나눈 값  
단. 이때 할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i. Qualified Financing이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경우: 20  
ii. Qualified Financing이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9개월을 초과하여 18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경우: 30  
iii. Qualified Financing이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을 초과하여 24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경우: 40  
(ii)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Qualified Financing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금 39,967원(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본조 제2항 제3호를 준용하여 조정된 가격)으로 조정하고 전환비율도 이에 따라 전환한다.

8. 본건 우선주의 전환청구 전에 제2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각 조정 전 전환가격은 직전 회차 조정 후 전환가격으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유·무상증자를 병행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조정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반영한다.

9. 이 계약에 의해 산정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③ 본건 우선주 주주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유·무상증자 등을 실시함으로써 제2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이 액면 가액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회사는 유·무상증자 등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전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본

등기번호	640537
------	--------

계약에 의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보유하여야 한다.

⑤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및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상환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우선주 주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환청구기간: 본건 우선주 주주는 2022년 9월 10일부터 2029년 9월 9일까지 상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때, 배당가능이익이 본건 우선주 주주의 상환가액에 미달할 경우 본건 우선주 주주는 각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에 관하여 분배받을 권리를 갖는다.

2. 상환방법: 본건 우선주 주주는 회사에 서면으로 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상환청구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상환가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시의 배당가능이익이 제3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미달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후 각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승인을 통해 배당가능이익이 확정되는 날의 다음날에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3. 상환가액: 상환을 청구한 본건 우선주의 발행가액(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이 있더라도 그에 불구하고 본건 우선주 주주가 이 계약에 의거 회사에 납입한 주금납입총액을 기준으로 함)과 이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제2호에서 정한 상환하여야 할 날(상환하여야 할 날 이전에 상환할 경우에는 실제 상환일)까지 연복리 8%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기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자금액을 한도로 상환가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4. 회사가 제2호에서 정한 상환하여야 할 날에 상환하지 못하여 연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상환가액에 대하여 이 계약체결일의 본건 우선주 주주의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복리 15%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5.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본건 우선주의 상환청구에 응할 수 있도록 매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내에서 상환주식에 대한 상환준비금을 최대한 최우선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배당가능이익(배당가능이익으로 환원 가능한 법정준비금 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본건 우선주의 상환청구에 일부 금액이라도 응하지 못할 경우 본건 우선주 주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본건 우선주 주주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본건 우선주 주주가 판단하기에 최대한 최우선적으로 상환준비금을 적립했다면 상환에 추가적으로 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산출되는 금액(최대한 최우선적으로 적립가능했던 상환준비금과 실제 상환에 응하였던 금액의 차액으로서, 상환청구에 응하지 못한 금액을 상한으로 함)으로 정하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배상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본건 우선주 주주가 달리 지정하는 기일 내(이하 통칭하여 "배상기일")에 배상을 완료하여야 한다.

6.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본건 우선주 주주가 요청할 경우, 본건 우선주의 상환청구에 응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으로 환원이 가능한 법정준비금에 대하여는 법률상 가능한 최대한을 배당가능이익으로 환원하여 상환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7.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본건 우선주 주주가 상환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상법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이 때 이해관계인은 본건 우선주 주주의 요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전항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해관계인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전항의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단, 전항에서 정하거나 본건 우선주

등기번호	640537
------	--------

주주가 별도 요청한 조치를 포함하여 상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등에서 정한 상환요건의 충족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 이해관계인 중 김한준(이하 “김한준”)은 김한준 본인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 항에 따른 의무·책임을 부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불이행 등의 경우 본건 우선주 주주는 회사에 대해 본건 우선주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 (신주인수권)  
 본건 우선주 주주는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본 계약에 의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상환전환우선주 (단, 우선권을 행사한 이후의 무상증자의 경우는 우선권 행사 후 보유 주식을 의미함)로,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2019년 09월 10일 설정      2019년 09월 16일 등기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

(2019.10.31. 발행 제2종상환전환우선주식)

1.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내용

(1) 본건 우선주는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보통주에 대해 우선권이 있는 주식이고,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자 상환주식이며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다.

(2) 본건 우선주의 존속기간(이하 “존속기간”)은 발행일부터 10년(2029년 10월 30일)까지로 정하며, 존속기간이 경과하면 본건 우선주는 보통주로 자동 전환된다. 다만, 본건 우선주 주로부터 상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우선주로서 존속된다. 미지급배당금이 있거나 존속기간 만료시에 배당가능이익이 상환가액(본 의사록 제5조 제1항 제iii호에서 정의한 상환가액에 따름, 이하 동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지급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또는 배당가능이익이 상환가액을 초과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이 확정된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우선주로 존속한다.

2. 상환전환우선주식의 배당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의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적 권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사가 배당을 실시할 경우 본건 우선주의 우선배당률: 발행가액의 1%

(2) 보통주의 배당률이 본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배당참가여부: 참가함

(3) 실제 배당이 우선배당율에 미달할 경우 후년도의 누적여부: 후년도의 이익배당에 대하여 누적적으로 배당받음

3.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1) 회사가 청산할 경우, 본건 우선주 및 2019년 7월 26일 및 2019년 8월 5일 (주)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DSC초기기업성장지원펀드, 네이버 주식회사, 퀴텀-코리아오메가4차산업핵심기술펀드, 슈미트밸류업개인벤처조합제1호, 슈미트밸류업개인벤처조합제2호, 트러스트자산운용 주식회사에게 발행한 우선주 그 발행가액 및 연복리 8%로 가산한 금원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 및 기존 우선주(KT-DSC창조경제청년창업투자조합, DSC Follow-on 성장사다리펀드, 네이버 주식회사와 2017. 6. 16자 체결한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에 따라 회사가 발행한 우선주 및 산은캐피탈(주)와 2017. 7. 14자 체결한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에 따라 회사가 발행한 우선주, 이하 본조에서 동일함)에 우선하여 잔여재산 분배 또는 인수대가의 분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된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이와 같이 본건 우선주 및 2019년 7월 26일 및 2019년 8월 5일 (주)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등기번호	640537
------	--------

DSC초기기업성장지원펀드, 네이버 주식회사, 퀀텀-코리아오메가4차산업핵심기술펀드, 슈미트 벨류업개인벤처조합제1호, 슈미트벨류업개인벤처조합제2호, 트러스트자산운용 주식회사에게 발행한 우선주에 대한 분배 후 남는 재산에 대하여는 기존 우선주가 그 발행가액 및 연복리 8%로 가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 분배를 받으며, 이 경우 청산 이전 까지 미지급된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보통주는 모든 우선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 후 남는 잔여재산을 보통주의 발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배분 받는다. 그 후에도 잔여재산이 남는 경우, 모든 우선주 및 보통주는 지분비율(모든 우선주는 잔여재산 배분 시점의 각 우선주의 전환단가로 보통주 전환된 것으로 간주)에 따라서 잔여재산을 배분 받는다.

(2) 회사가 청산을 위하여 회사의 중요한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 주주는 회사가 매각하고자 하는 중요한 재산을 제3자에 우선하여 매수할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하여 회사는 본건 우선주 주주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의 내역 및 양도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를 하여야 하며, 본건 우선주 주주가 위 서면통지에 대하여 매수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위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매수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매각대상 재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본건 우선주 주주에 대한 위 서면통지에 기재된 조건보다 제3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여서는 아니된다.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청산으로 간주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 i) 회사에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 ii) 회사 존속에 기초가 되는 자산으로서 그 처분이 회사의 영업양도나 폐지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자산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전부를 매각, 임대, 양도, 기타 방법에 의해 처분한 경우, 해당 자산에 관한 지식재산권이 제3자에게 독점적으로 허여되는 경우
- iii) 회사가 신설합병 또는 흡수합병 되거나 단일 또는 일련의 거래에 의해 다른 회사에 의하여 인수 또는 매각되고 위 합병 또는 인수 후 회사의 주주가 존속회사(존속회사가 완전 자회사인 경우 존속 회사의 모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50% 미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4) 제1항의 잔여재산 또는 인수대가의 가액은 공인된 감정인, 공인회계사 또는 그에 준하여 본건 우선주 주주가 인정하는 평가인에 의한다.

4.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전환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 주주는 존속기간 내에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제1항 및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전환의 경우에 적용되는 전환가액 및 전환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i)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하고, 최초의 전환가액은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본 계약에 따라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는 해당 조건에 의거 전환가액이 조정되고 그에 따라 전환비율도 조정된다.
- ii) 본건 우선주 주주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회사가 본건 우선주 주주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내용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연계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이익참가부사채 등)를 발행(사후적으로 전환가액이 본건 우선주 주주의 전환가액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할 경우에는 본건 우선주 주주가 인수한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도 같은 금액으로 하향 조정되며, 수차에 걸쳐 이와 같은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나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은 그 중 가장 낮은 발행가액으로 하향 조정

등기번호	640537
------	--------

된다. 단, 본건 우선주 주주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우리사주조합 배정 유상증자는 본 항의 전환가액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iii)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조정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 주식수)

iv) 주식분할, 주식병합의 경우 전환가액은 분할비율, 병합비율에 따라 조정되고 이에 상응하게 전환비율도 조정된다.

v) 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장된 회사가 본건 우선주 주주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 시가를 하회하는 내용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며, 이에 따라 전환비율도 조정된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 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 주식수)

위 산식에서 기발행 주식수 산정시 전환우선주, 주식연계사채는 조정 후 전환가액 산정 당시의 당해 전환가액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보통주식수를 적용하고, 신발행 주식수 산정에는 신발행되는 우선주, 특수사채의 전환가액 및 하향조정된 전환가액(사후적으로 전환가액이 본건 우선주 주주의 전환가액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를 적용하여 산출된 보통주식수를 적용한다. 아울러 위 산식에서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식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 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vi) 회사가 IPO 공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제3자와 인수합병(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통한 기업결합을 포함함), M&A(제3자의 지분 취득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경영권 변경 포함)시 해당 거래가액의 산정을 위한 회사 주식의 평가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가액을 해당 공모가의 70% 또는 평가가액의 70%의 금액으로 조정하고 전환비율도 이에 따라 조정한다.

vii) (a)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회사가 주당 발행단가를 육만이백이십칠원(금60,227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본조 제2항 제3호를 준용하여 조정된 가격) 이상으로 하여 백억원(금10,000,000,000원) 이상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이하 “Qualified Financing”), 최초 1회에 한하여 조정 후 전환가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 전환비율도 이에 따라 전환한다. 단, 조정 후 전환 가격은 본건 우선주 발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i) {Qualified Financing 발생 당시 투자 전 전체 지분가치 × (100 - 할인율) ÷ 100} 또는 육백억원(금60,000,000,000) 중 작은 값에 0.85를 곱한 후 (ii) 본건 우선주와 같은 발행가액으로 발행한 주식의 전체 납입금액에 0.15를 곱한 값을 차감하고 이를 2019.7.26 기준 기발행주식의 총수 608,000주(보통주 400,000주, 우선주 208,000주, 단, 이 계약 체결 후 해당 주식의 총수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반영한 것을 의미)로 나눈 값

단. 이때 할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i. Qualified Financing이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경우: 20

ii. Qualified Financing이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9개월을 초과하여 18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경우: 30

iii. Qualified Financing이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을 초과하여 24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경우: 40

(b)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Qualified Financing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39,967원(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본조 제2항 제3호를 준용

등기번호	640537
------	--------

하여 조정된 가격)으로 조정하고 전환비율도 이에 따라 전환한다.

viii) 본건 우선주의 전환청구 전에 제2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각 조정 전 전환가격은 직전회차 조정 후 전환가격으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유·무상증자를 병행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주는 전환가액조정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반영한다.

ix) 이 계약에 의해 산정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3) 본건 우선주 주주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유·무상증자 등을 실시함으로써 제2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이 액면 가액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회사는 유·무상증자 등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4)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전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본 계약에 의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보유하여야 한다.

(5)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및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한 우선주 및 전환으로 발행된 신주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 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5.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상환에 관한 사항

(1) 본건 우선주 주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i) 상환청구기간: 본건 우선주 주주는 2022년 10월 31일부터 2029년 10월 30일까지 상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때, 배당가능이익이 본건 우선주 주주의 상환가액에 미달할 경우 본건 우선주 주주는 각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에 관하여 분배받을 권리를 갖는다.

ii) 상환방법: 본건 우선주 주주는 회사에 서면으로 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상환청구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상환가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시의 배당가능이익이 제3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미달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후 각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승인을 통해 배당가능이익이 확정되는 날의 다음날에 배당가능이익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iii) 상환가액: 상환을 청구한 본건 우선주의 발행가액(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이 있더라도 그에 불구하고 본건 우선주 주주가 이 계약에 의거 회사에 납입한 주금납입총액을 기준으로 함)과 이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제2호에서 정한 상환하여야 할 날(상환하여야 할 날 이전에 상환할 경우에는 실제 상환일)까지 연복리 8%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기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자금액을 한도로 상환가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iv) 회사가 제2호에서 정한 상환하여야 할 날에 상환하지 못하여 연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상환가액에 대하여 이 계약체결일의 본건 우선주 주주의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복리 15%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v)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본건 우선주의 상환청구에 응할 수 있도록 매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내에서 상환주식에 대한 상환준비금을 최대한 최우선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배당가능이익(배당가능이익으로 환원 가능한 법정준비금 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본건 우선주의 상환청구에 일부 금액이라도 응하지 못할 경우 본건 우선주 주주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본건 우선주 주주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본건 우선주 주주가 판단하기에 최대한 최우선적으로 상환준비금을 적립했다면 상환에 추가적으로 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산출되는 금액(최대한 최우선적으로 적립가능했던 상환준비금과 실제 상환에 응하였던 금액

등기번호	640537
------	--------

의 차액으로서, 상환청구에 응하지 못한 금액을 상한으로 함)으로 정하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배상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본건 우선주 주주가 달리 지정하는 기일 내(이하 통칭하여 "배상기일")에 배상을 완료하여야 한다.

vi)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본건 우선주 주주가 요청할 경우, 본건 우선주의 상환청구에 응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으로 환원이 가능한 법정준비금에 대하여는 법률상 가능한 최대한을 배당가능이익으로 환원하여 상환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vii)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본건 우선주 주주가 상환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상법 및 정관에 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이 때 이해관계인은 본건 우선주 주주의 요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2) 회사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전항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해관계인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전항의 의무를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단, 전항에서 정하거나 본건 우선주 주주가 별도 요청한 조치를 포함하여 상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등에서 정한 상환요건의 충족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 이해관계인 중 김한준(이하 "김한준")은 김한준 본인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 항에 따른 의무·책임을 부담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불이행 등의 경우 본건 우선주 주주는 회사에 대해 본건 우선주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6.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 주주는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본 계약에 의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상환전환우선주(단, 우선권을 행사한 이후의 무상증자의 경우는 우선권 행사 후 보유 주식을 의미함)로,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2019년 10월 31일 설정      2019년 11월 06일 등기

**기 타 사 항**

1. 이익에 의한 주식 소각

1.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단, 상환우선주식이 발행된 경우에는 상환우선주식이 전부 상환될 때까지 본 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의 양도~~

~~주주가 당 회사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17년 06월 16일 말소      2017년 06월 30일 등기

1.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당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따른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

2. 파산

3. 합병

등기번호	640537
------	--------

4. 분할 또는 분할합병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2019년 08월 05일 설정      2019년 08월 05일 등기

**주식매수선택권**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당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상법 제 542 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 542조의 3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당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 또는 경영, 기술혁신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가. 회사의 임직원. 다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회사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5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다. 대학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라. 회사가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임직원

< 2019년 08월 05일 변경      2019년 08월 05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가.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의 배당 기산일을 준용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고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 9 조 제 1 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고용자로 한다.~~

~~나. 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제 5 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위 1)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 (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등기번호	640537
------	--------

<p>가. 회사의 임직원. 다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회사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p> <p>나.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5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p> <p>다. 대학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p> <p>라. 회사가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임직원</p> <p>&lt; 2019 년 08 월 05 일 변경      2019 년 08 월 05 일 등기 &gt;</p> <p>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할 날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은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1.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del>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del></p> <p><del>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del>  <del>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del>  <del>다.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del>  <del>라. 주식매매, 주식교환 및 기타의 방법으로 회사 대주주의 변동이 있는 경우</del></p> <p>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p> <p>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다.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라.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p> <p>&lt; 2019 년 08 월 05 일 변경      2019 년 08 월 05 일 등기 &gt;</p>
--

회사성립연월일	2017 년 04 월 04 일
---------	------------------

<p>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p> <p>2017년 05월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38, 101동 305호(하동, 광고더샵레이크파크오피스텔)으로부터 본점이전</p> <p>2017 년 05 월 19 일 등기</p>
--

-- 이 하 여 백 --

등기번호	640537
------	--------

관할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수수료 700원 영수함

# 열 램 용

-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 \*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
- \*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